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안내

[2023학년도 상반기]



2024. 2.

서울대학교
[감사팀]

□ 권한 없는 자의 회계사무 처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기관별로 본교의 지출, 수입 등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교직원을 둘 수 있고, 회계사무는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계관계 교직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 「서울대학교 회계관계 교직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회계관계 교직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과에 회계관계 교직원 대리 임명을 요청하여 대리 지정된 교직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회계관계 교직원이 연가 등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회계관계 교직원 대리 임명 등의 절차 없이 권한 없는 자가 법인회계 사무를 처리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회계관계 교직원 지정에 관한 규칙]

□ 미납수입금 관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르면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준용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입의 고지는 납입기한, 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납부자가 수입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회계 수입금 관리 안내’ (재무과-3280, (2021.3.22.))에 따르면 수입징수원

은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미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준수하여 수입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기관 등은 시설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월별로 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는 등 적절한 채권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물품 관리

□ 발전기금 회계 물품 관리 부적정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예산회계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물품은 서울대학교로 귀속하여 「서울대학교 물품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 지침에 따르면 비소모품은 물품 관리의 대상으로 분임물품관리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 취득원장에 등록하고 현품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취득·처분 현황 등을 포함한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물품관리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에서는 발전기금 회계에서 구입한 비소모품을 물품 취득원장에 등록하지 않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관리하고, 재물조사 결과보고서에 물품 취득 현황 등을 누락 보고하였음.

[관련 규정: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예산회계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물품 관리 지침]

3

계약 · 공사 관련

□ 하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예산회계 관리지침」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 기관은 공사 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의 경우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계약 의무 미이행 등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시행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발주 기관은 공사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에서는 발전기금 회계를 재원으로 공사를 추진하며 하자보증금 지급 확약 문서(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등)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예산회계 관리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인사 관련

□ 자체직원 채용 관리 미흡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여 취업자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등

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학사 관련

□ 공개강좌 운영 부적정

-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개강좌 등 과정의 사정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강생은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과정 이수를 할 수 있는데도,
 - ○○○ 기관은 공개강좌를 운영하며 수료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로 수료자를 확정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6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정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부터 지정용기를 사용하여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에서는 지정 용기에 담기지 않은 특정 의료 폐기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전용 냉장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의료폐기물 보관 시설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